

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신대학교의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비교과교육과정의 제반사항 및 운영을 효과적으로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고, 학생처장, 기획처장, 도서관장,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, 다른 위원은 생활관장, 각 센터장, 연구소장, 학과장, 외부전문가, 비전임교원, 학생 중에서 해당 전공 및 활동 분야를 참고하여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(개정 2023.06.01.)

③ 사회의 흐름 및 다양한 의견 등을 반영하기 위해 외부전문가, 재학생, 학부모, 비전임교원, 강사, 직원 등을 대상으로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.

제3조(임기)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위촉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 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.

제5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비교과교육과정의 개발, 편성, 개편, 폐지에 관한 사항
2. 비교과교육과정 학생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
3. 비교과교육과정 성과 및 환류체계 점검에 관한 사항
4. 비교과교육과정 평가에 관한 사항
5. 기타 비교과교육과정과 관련된 제반 사항

제6조(사무) 위원회의 사무는 교무처에서 담당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22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